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6. 4. 9

나. 회부일자 : '96. 4. 9

3. 제안이유

○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의 승인에 따라 관련 정원을 기관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직속기관(지방공무원 교육원) : 정원 감축 1명(5급)

○ 본청 : 정원 증원 1명(4급)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골자로는

직속기관인 지방공무원 교육원 정원 1명(5급)을 감축하여 직속기관 정원의 총수를 982명에서 981명으로 하고 본청에 1명(4급)을 증원하여 본청 정원의 총수를 940명에서 941명으로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